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전관리현장 준수 대상 확대〉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803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연월일 : 2024. 7. 16.
3. 회부연월일 : 2024. 7.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현장의 준수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안전관리현장 제정·고시 주체를 국무총리에서 정부로 변경하고, 안전관리현장 준수 대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에게 까지 확대하며, 인용 조문의 조문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8 및 제74조의3).

현행	개정안
제66조의8(안전관리현장) ① 국무총리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안전관리현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제66조의8(안전관리현장) ① 정부는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이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의 예방·대비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 ----- ----- ----- ----- ----- ----- ----- ----- ----- -----

현행	개정안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생략) 2.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 다. (생략) 라.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② ~ ⑩ (생략)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의료법」 제17조의2----- ----- ----- ----- ② ~ ⑩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국무총리가 안전관리현장을 제정·고시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¹⁾하고 있음.

안전관리현장은 제정 당시(2004. 11. 4.)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고시로 제정되었으나, 2014년 1월 29일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총괄·수립하는 부서인 안전행정부 고시로 지금의 내용과 같이 개정되었고, 현재는 행정안전부 고시로 존재하고 있음.

[안전관리현장(행안부 고시, 2014. 1. 29. 개정)]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1.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1.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1. 기업은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위험 요인을 없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8(안전관리현장) ① 국무총리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현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현장에 관한 현행법 조문은 법문의 외형상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는 윤리규범에 해당하며, 실제 내용상 준수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교육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두루 지켜야 할 사항을 선언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안전관리현장을 정부가 제정·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관리현장의 준수대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 안전관리현장의 실질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무총리 훈령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을 감독하는 차원에서 발령하는 것으로, 현장의 준수 대상으로 일반 국민 등 민간의 영역까지 포함하는 다른 유사 입법례의 경우에도 그 제정 주체를 정부 또는 소관 부처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음.

[헌장을 규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

제정 주체	준수 대상	관련 법령
정부	지능형 로봇 개발자·제조자 및 사용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18조(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등)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 개발자·제조자 및 사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u>지능형 로봇윤리헌장</u> (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일반 국민	「해사안전법」 제23조(해양안전헌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에 관한 사항과 해사안전관리 등 해양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u>해양안전헌장</u> 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국세청장 관세청장	납세자	「관세법」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관세청장은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6조의2 및 제11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u>납세자권리헌장</u> (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u>납세자권리헌장</u> 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행정조직 내부 (공무원)	공무원 헌장(대통령훈령)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국무총리 훈령)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문 의 처

02)6788-5349